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8조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동 공고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 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2.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마약정책과장, 마약관리과장, 마약수출입과장, 임상제도과장,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과장, 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약품심사조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약품규격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순환계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중약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소화계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약효동등성과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바이오심사조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생물제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생약제제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

주무관 유설영 사무관 이유빈
의약품안전평가과장 2019.4.19.
가과장 문은희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2629 (2019.04.1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06 팩스번호 043-719-2700 / yoo5295@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